

6월 초 선거 유력... 권력독점 벗어나 선진정치 시대 열어야

두 번째 조기대선

60일 이내 선거... 6월 2·3일 윤곽 12·3 사태 수습 등 개헌 논의 필요 '제7공화국' 청사진 화두 전망

‘정치 양극화.’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다. 이 갈등이 극에 달한 결과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비상계엄’이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사 두 번째로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오는 6월 3일 치러질 것이 유력한 이번 대선에서는 12·3 내란 사태의 후폭풍을 수습하는 방안뿐 아니라, ‘제7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개헌 논의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양극화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시작됐다는 게 중론이다. 양극화가 심화된 것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었다. 양측의 ‘한(恨)’은 ‘해원(解冤·원통함을 푸는)정치’ 양상을 띠게 됐고, 대한민국은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0.7%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만큼 양진영이 극단적으로 갈라져 자기들끼리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소식을 듣고 환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뿔뿔 뿔뿔했다는 의미이다.

정치 양극화의 토양에서 탄생한 윤석열 정부는 야당이 다수당인 국회와 끝없이 갈등했다. 게다가 10·29 이태원 참사, 해병대원 사망사건,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 게이트, ‘바이든 날리던’ 등 중요한 고비에서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짧은 기간 동안 국민의 마음 속에 ‘혐오’라는 감정이 풀릴 새 없이 오히려 쌓이기만 한 셈이다.

결국 집권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슈마다 거야와 맞닥뜨린 윤 전 대통령은 계엄선포란 ‘물리적 해결책’을 선택했지만 국회와 시민의 방어로 실패하기에 이른다. 헌법재판소마저 위법·위헌적이라고 판결할 정도로,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남게 됐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은 파면됐고, 미래를 향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다가올 조기 대선이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과

정에서 87년 헌법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위헌임에도 버티는 대통령 권한대행들, 그리고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음에도 자리를 지키는 국무위원들. 또 현재의 선고가 기대보다 늦어지자 ‘재판관 8인(혹은 9인)에게 나라의 운명을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는 회의론까지 대두됐다.

그간 정치권에서 개헌을 화두로 던질 때, 여론은 전반적으로 무심했다. 개헌이 국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적

다고 느껴서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행 헌법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깨달았고, 이때문에 바꿀 것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이다. 개헌을 향한 여론이 성숙된 것이다.

이에 조기 대선에서 7공화국에 대한 청사진이 화두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 일정이 시작되기도 전인 6일 국회에서 특별담화를 통해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 논의에는 그간 수많은 거부권을 통해 입법부를 무력화시킨 대통령의 권력을 어떻게 견제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면 민의를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지, 시대 상황에 맞는 기본권은 어떤 것인지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단순히 권력구조 논의에만 천착한다면 진영 간 싸움 끝에 개헌이 무산될 공산이 커서다. 그레야 87년 헌법의 문제점을 고치고, 비상계엄 선포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개헌론자들의 입장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현재 탄핵선고 살펴보니

“국가긴급권 남용해 사회적 혼란 초래... 국민 신임 배반한 것”

계엄 요건 등 5개 항목 설명 “파면으로 얻는 이익이 더 크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탄핵안)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2022년 5월 10일 용산 대통령실에 당당히 입장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을 기해, 1060일만에 불명예로 퇴진했다.

현재의 결정문은 적법 요건과 본안 판단으로 나뉘어 있다. 적법 요건은 탄핵소추가 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다. 적법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된다. 본안 판단은 탄핵 사건의 내용적인 부분이다.

적법 요건을 먼저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는 계엄 선포가 대통령이 권한이 맞지만, 비상 수단인 만큼 헌법·계엄법에서 요건과 절차, 사후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법심사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 철폐’ 부분도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동일한 사실에 대해,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추가·철폐·변경하는 것은 ‘소수 사유’의 추가·철폐·변경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 찬성 200명을 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결정



1 비상계엄 선포 정당성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 상황 아님,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 할 수 없어 '경고성·호소형 계엄 주장'은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 아님,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적 요건 위반
2 국회 군경투입 위법성	군경 투입·국회 봉쇄로 국회의 권한 행사 방해, 헌법 조항 위반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권 위법
3 계엄포고령 위헌성	정당제도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 위반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 침해
4 선관위 압수·수색	선관위 영장 없이 압수수색, 영장주의 위반·독립성 침해
5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탄핵인용 8 : 0
▶ 중대한 법 위반행위 전원일치 인정
국민의 신임 배반,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

자료: 헌법재판소

/뉴스시그래픽

못박았다.

이밖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사위 조사 없이 탄핵안 의결 ▲반복 발의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지만, 현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던 ‘각하’는 애초 불가능했다.

현재는 본안의 쟁점을 ▲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국회에 군경 투입·정치인 체포 지시 ▲계엄포고령 1호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으로 나눠서 설명했다.

현재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헌법에 정한 ‘전시·사변’ 등 중대한 위

기상황이 아니었다며, ‘경고성·호소형 계엄’이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배척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야당이 의회 독재로 인해 국정이 마비됐다’는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즉, 2024년 12월 3일 이전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며, 비상계엄 요건이 충족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의 절차도 위헌이라고 봤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를 ‘국무위원 모임’이라고 판시했다. 사실상 비상계엄 선포 안전에 대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고, 국무위원들의 부서(서명)가 없

는 점, 국회 통고를 하지 않은 점 등도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현재는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것이 맞다고 봤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차단하게 했다는 사실관계 역시 인정했다. 이는 입법부의 권한과 정당활동의 자유,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현재는 국회 활동과 함께 ‘정치인 체포 지시’도 사실이라고 봤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광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을 받아들인 것이다.

계엄 포고령 1호도 법률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권력 분립 원칙, 직업의 자유 및 정치적 기본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 압수·수색은 영장주의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특이한 점은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정치인 체포 지시와 따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에서 ‘사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따지기 위함으로 보인다. 현재는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는 윤 전 대통령의 의사에 따라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권의 독립 침해라고 비판했다.

결국 현재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고,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한데다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봤다. 그리고 이는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이기에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윤석열)의 법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가적 혼란·파급 효과가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손실보다 크다는 의미로, 윤 전 대통령의 복귀가 국가에 더 큰 혼란을 불러올 것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서예진 기자